

# 定 款

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

#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정관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”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### 1. 장학사업

**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**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## 제2장 재산 및 회계

**제6조(재산의 구분)**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###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

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
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4. 세계 (歲計) 잉여금중 적립금

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**제7조(재산의 관리)**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8조(재산의 평가)**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**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**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(果實)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**제10조(회계의 구분)**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**제11조(회계원칙)**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

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12조(회계연도)**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2조2(회계의 공개)** 이 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(2019. 6. 25. 제정)

**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**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.

**제14조(임원 등의 보수 제한)**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(임원과 직원)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**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**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**제1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**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.
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
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
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3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.

### 제3장 임원

**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 15명(2019. 6. 25. 개정)

2. 감사 2명

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**제18조(상임이사)**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**제19조(임원의 임기)** ①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**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금천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**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의 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**제2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**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2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**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**제2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5조(감사의 직무)**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6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
7.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

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
## 제4장 이 사 회

**제26조(이사회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27조(의결정족수)**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**제28조(의결제척 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29조(회기)**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
**제30조(이사회 소집)**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**제31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**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서면결의 금지)**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33조(정관의 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**제34조(해산)**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


제36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7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 위	성 명	주 소	직 업	임 기
이사장	천희원	서울 금천구 독산동 332-14 계룡A 101-1602	임대업	4
이 사	강구덕	서울 금천구 시흥4동 5-13 삼일A 105-1102	금천구의회 의원	4
이 사	김금순	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A 608-1107 호	(주)정수산업개발 대표이사	4
이 사	박도식	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 102-603	범일운수(주) 대표이사	4
이 사	박준식	서울 금천구 독산3동 895-26	금천구의회 의장	4
이 사	백연수	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7-32	주부	4
이 사	유충식	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-46 정원A 501호	(주)원신월드 대표이사	4
이 사	최용호	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 래미안A 108-2102	환경개발(주) 대표이사	4
이 사	권영환	서울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A 102-1504	대우인쇄교역 대표	2
이 사	김재복	서울 관악구 신림동 563-7	태성바인텍(주) 대표이사	2
이 사	배춘자	서울 금천구 독산1동 292-14	(주)아이유포드 대표이사	2
이 사	정균영	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55 동양A 101-901	두선산업(주) 대표	2
이 사	조상익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34-901	(주)진에듀 금천종로엠스쿨 대표	2
이 사	천병일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112-1001	금천문화웨딩홀 대표	2
이 사	최시성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-1 광장A 2-1007	제이에스세라믹(주)이사	2
감 사	김 효	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67 성원A 106-601	노광건설(주)대표이사	2
감 사	김은숙	서울 금천구 독산동 152-6	삼희빌딩 대표	1

## 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07년 11월 6일)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1】

##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

【법인명 :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】

#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07년11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	2계좌	500,000,000원	
합 계	2계좌	500,000,000원	
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
#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(2007년 11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	2계좌	500,000,000원	
합 계	2계좌	500,000,000원	

【별지2】

# 현재의 기본재산목록

【법인명 :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】

## 1. 기본재산 총괄표

(2023년 9월 11일 현재기준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		5,040,000,000원	
합 계		5,040,000,000원	
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
##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(2023년 9월 11일 현재기준)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		5,040,000,000원	
합 계		5,040,000,000원	